

安全點檢과 保險

郭 大 濟
<技術管理部長>

目 次

1. 序 論
2. 安全點檢의 定義
3. 安全點檢과 保險
4. 安全點檢의 方向
5. 點檢員의 保險教育

1. 序 論

1973年 5月 15日 社團法人 韓國火災保險協會(以下“火協”이라 한다)가 創立된지도 어언 3年이 지나갔다. 그동안 火協은 처음 實施하는 火災豫防 安全點檢을 하느라고 많은 隘路를 겪으면서도 그 나름대로의 틀을 어느정도 잡았다고 하겠다. 그 實例로서 서울시와 釜山市는 서울과 釜山地域의 特殊建物에 대한 消防檢査를 協會가 實施하는 安全點檢으로 代身하고 있으며 點檢結果에 따라 行政官廳은 建物主에게 是正命令을 내리고 火協은 이에 대한 是正結果 確認點檢을 다시 하여 그 結果를 行政官署에 通報하면 司法및 行政措置를 함으로써 不良建物이 漸次的으로 改善되어 가고 있다.

또한 많은 建物所有主와 建物을 新築하고자 하는 사람들로 부터 建物의 設計 또는 施工에 대한 問議가 자주 오고 있으며 海外 再保險者들에게서도 火協에 Underwriting Survey 를 要請해 오고 있는 實情이다.

이러한 時點에서 火協이 實施하고 있는 安全點檢이 과연 무엇이며 保險과 어떠한 密接關係를 가지고 있나 다시한번 살펴보면서 安全點檢의 方向을 摸索해 볼과 同時에 保險과의 密接關係를 究明해 본다는 것은 意味있는 일이라 하겠다.

2. 安全點檢의 定義

가. 火保法上에 나타난 安全點檢

現在 火協에서 實施하고 있는 安全點檢이 果然 어떤것인가 이에 대하여 正確한 定義를 한번 내려 보라면 좀 구구한 意見들이 많이 나올줄로 안다. 그러나 火協의 安全點檢은 特別法에서 비롯된 것임을 누구나 반대하지는 않을 것이다.

安全點檢의 正確한 定義를 내리기 위해서는 먼저 「火災로 인한 災害補償과 保險加入에 관한 法律」(法律第2482號, 1973. 2. 6. 公布, 以下「火保法」이라 한다)의 立法趣旨와 그 內容을 檢討하

는 것에서부터 出發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不幸히도 「火保法」과 同 施行令에는 安全點檢의 定義가 내려져 있지를 않고 安全點檢의 基準에 대하여도 言及이 없다. 따라서 이 法全體의 內容과 흐름을 通해서 分析해 보는 수밖에 없다.

火保法 第1條(目的)에 보면 火保法의 立法趣旨가 明確하게 나타나 있는 即 國民生活의 安定에 寄與함을 大前提로,

1. 火災로 인한 人命 및 財産上의 損失 豫防
2. 迅速한 災害의 復舊
3. 人命被害에 대한 適正한 補償으로 되어있다.

이것을 다시 要約하면 災害의 豫防과 災害에 대한 補償이라고 하겠다. 따라서 安全點檢은 우선 災害의 豫防에 관한 것등으로 되어있다.

그리고 火保法 第11條(韓國火災保險協會의 設立)第15條(業務)第1號, 第16條(安全點檢)第1項에 보면 역시 「火災豫防 및 消火施設에 대한 安全點檢」이라고 規定되어 있어 火協의 安全點檢은 火災의 豫防에 관한 것을 點檢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여기서 追加된 概念은 消火施設에 대한 點檢이다.

다시 말하면 火災를 豫防할 뿐만 아니라 일단 火災가 發生했을 경우 이를 迅速히 鎮壓하는 施設 即 保險約款의 用語를 빌리면 損害輕減 및 防止施設에 대해 點檢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第16條第1項은 「協會는 保險契約 締結時 또는 保險契約更新時마다 當該 特殊建物の……安全點檢을 實施하여야 한다」라고 規定하고 있어 保險契約와 安全點檢의 密接한 關係를 맺어주고 있다. 그밖의 安全點檢에 관한 規定은 安全點檢의 節次와 通知등을 規定하고 있을 뿐 安全點檢의 定義와 內容基準등에 관하여는 言及되어 있지 않다.

나. 安全點檢의 實態

火協 創立以來 지금까지의 安全點檢은 初創期 구름을 잡는 狀態에서 우선 火災豫防關係法規를 토대로한 PEACE Check 를 주로 해왔다고 보겠

으며 1974年 12月 火協이 金融 pool을 흡수 統合함에 따라 75年부터는 保險의인 要素가 점차 가미되어 現在에는 高額物件 保險契約에 따른 Underwriting Survey 까지도 實施하고 있다.

PEACE Check란 Protection(豫防對策), Extinguishment(消火設備), Alarm(警報設備), Construction(建築物의 構造), Evacuation(避難施設)등을 말하는 것으로 火協이 그동안 實施해온 安全點檢은 防火管理의 側面이나 保險的 側面的 點檢을 實施하지 않은 것은 아니나 主로 防火施設 내지는 消火施設에 대한 點檢을 關係法規의 基準에 따라 實施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現時點에서 安全點檢의 定義를 내려 보고자 하는 理由도 火協이 指向하여야 할 將來의인 觀點에서 安全點檢의 概念부터 再 定立하고 보다 效率의인 安全點檢을 해보자는 필자의 所見을 피력하고자 하는 것이다.

다. 安全點檢의 定義

「가」項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火協이 實施하는 安全點檢의 母法인 「火保法」에 있는 安全點檢은 火災豫防 및 消火施設을 點檢하는 것이며 保險契約과 結付된 安全點檢을 말하는 것이다.

여기서 特히 留意하여야 할 事項은 火災의 豫防이라 함은 火災의 發生을 未然에 防止함은 물론 火災가 發生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迅速히 鎮壓 또는 이로 因한 被害를 極小化한다는 뜻으로 消火施設이라 함은 불을 끄는 모든 施設뿐만 아니라 불을 豫防하는 모든 施設을 例示의으로 表現한 것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안될 것 같다.

이러한 觀點에서 安全點檢의 定義를 내린다면 「安全點檢이라함은 火災豫防과 火災로因한 人命 및 財産上의 損失防止 또는 輕減을 위하여 建築物의 構造 및 配置狀態 各種設備狀況, 火災危險要素, 防火對策等을 點檢·診斷하고, 適切한 改善措置를 取하도록 하며 그 結果를 保險契約 및 危險管理에 적극 利用토록하는 一連의 業務를 말한다」고 하겠다. 이를 하나하나 풀이해 보고자 한다.

(1) 安全點檢의 目的

安全點檢은 火災發生의 豫防, 火災로 因한(일단 火災가 발생했을 경우) 災害의 防止 또는 輕減에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이러한 目的을 위해서는 人的 物的인 것을 막론하고 우리가 點檢할 수 있는 것은 다 事前에 點檢하여 이를 改善함으로써 安全點檢의 實效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과연 무엇을 點檢할 것인가 하는 것을 要約한 것이 定義의 中段이라 하겠다.

(2) 安全點檢의 內容

建築物의 構造 및 配置狀態라 함은 建築物의 主要構造部 및 壁의 材質, 形式, 耐火度, 防火區劃, 內裝防火處理, 周圍環境, 空地, 距離, 分散狀態, 密集度, 消防道路 및 通路避難通路 등을 말한다.

各種設備狀況이라 함은 各種 消火設備(初期消火設備은 물론 스프링클러 消火栓등), 消火用水設備(水源, 貯水, 撒水, 送水管, 用水設備等), 警報設備(自動火災探知設備, 非常警報設備, 放送設備 消防官署에의 速報設備等), 避難設備(器具, 승강설비, 피난장소, 피난통로, 出入口等), 電氣設備(變電, 發電, 配電, 蓄電池, 避雷, 非常照明, 特殊場所의 電氣設備等), 火氣使用設備(이에는 가정용 사무실용 作業用 난방용等 各種 火氣使用 設備 및 「가스」設備 油類使用設備등) 등을 말한다.

火災危險要素라함은 危險物의 貯藏, 管理, 使用 狀態, 特히 爆發·延燒危險등 모든 設備의 管理·使用實態, 危險한 作業의 有, 無等 特別한 火災危險의 有無와 人的 火災危險要素(常勤者 및 出入者의 防火認識度, 作業에 임하는 姿勢, 習性, 火氣圍束實態, 勤務秩序, 出入秩序, 警備狀態等)를 말한다.

防災對策이라 함은 綜合對策으로서 人的, 物的, 要素가 效果의으로 結合되어 活用할 수 있는 狀態에 있는가 하는 것을 말하며 해당 建物を 「카버」할 수 있는 必要한 設備의 有無와 人的 防火訓練狀態, 施設의 使用訓練, 自治消防隊

또는 消防官署의 活用度, 평상시의 防火管理實態 避難訓練등을 말한다.

安全點檢은 以上の 事項들을 點檢하고 이를 綜合評價(診斷)하여 適切한 改善措置를 取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點檢結果 改善措置

適切한 改善措置를 取하도록 하는 方法에는 여러가지가 있다. 크게는 安全點檢의 結果를 統計分析하여 政府機關 또는 關係機關에 綜合對策으로서 立法措置나 行政措置를 建議·施行케 하는 것으로 부터 個個의 建物에 대한 行政命令, 建物所有主에의 改善勸誘, 防火제명, 保險料의 割引·割増을 통한 改善誘導등을 들 수 있다. 이렇게 하여 危險部位를 改修, 危險要素를 除去함으로써 安全點檢의 效果가 나타나는 것이다.

定義의 下段에 관하여는 다음 「安全點檢과 保險」에서 詳述코자 한다.

3. 安全點檢과 保險

災害의 豫防活動은 文明의 發達과 더불어 계속 發展해 왔음은 周知의 事實이나 安全管理나 安全點檢이니 하는 概念은 現代의인 概念이며 역시 現代의인 次元에서의 火災豫防, 火災로 因한 損害의 防止 輕減은 保險과 밀접한 關係를 맺고 있다고 하겠다. 英國의 例만 보더라도 保險會社에서 保險의 目的物에 火災가 發生하였을 경우에 對한 消防 活動은 保險會社에서 담당하던 것이 發展하여 保險會社의 聯合體인 Offices Committee에서 共同으로 消防活動을 取扱하다가 現在에는 官民(政府和 保險會社) 合同으로 消防機構를 運營하고 있다.

災害의 豫防은 保險會社의 收支와 직결되고 (물론 保險契約이 되어 있는 경우에 한 한다) 保險會社 또는 이들의 聯合體가 經營하는 防災機構 및 防災活動은 수없이 많다. (美國의 U.L., F.M.N.F.P.A 英國의 F.P.A 등 世界에 알려진 것만도 40여개의 기관이 있다.) 火協이 實施하는

安全點檢은 保險對象物件에 限함을 原則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保險과의 關係는 不可分의 密接한 關係에 있다고 하겠다.

이를 具體적으로 좀더 살펴보고자 한다.

가. 安全點檢과 保險契約

安全點檢의 定義는 前述한 바와 같거니와 이러한 點檢結果는 保險對象 物件의 現狀(付保當時의 狀況)을 正確하게 把握케 할 뿐만 아니라 年次的인 點檢은 對象物件의 歷史와 함께 危險要素의 變遷過程과 改良狀態 또는 惡化狀態까지도 把握케 한다. 따라서 保險契約의 先決條件인 危險의 選擇 正確한 保險價額의 算定 適正料率의 適用 및 算定을 가능케 하며 付保物件의 危險管理를 可能케 한다.

現在까지 火協이 點檢을 實施한 經驗에 의하면 保險價額의 正確한 算定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 하는것을 實感하지 않을 수 없다. 損保業界에서도 이를 認定하여 損害保險協會가 作成한 保險價額의 評價基準이 나오기는 하였으나, 外野職員이 혼자 나가서 保險價額을 査定하기까지는 相當한 教育과 經驗이 必要하며 特別 機械나 設備의 保險가액을 評價하는 데에는 기술직이 아닌 一般職으로서 新調達價額(復成價額)의 算定등 困難한 點이 한 두 가지가 아닌 것이 사실이다.

뿐만 아니라 詳細한 評價基準이 마련된다 하더라도 이를 適用하여 評價하는데 걸리는 時間과 費用은 극단적인 경우에 收入保險料 보다는도 保險價額評價費用이 더 들어가는 경우도 생길수 있음을 쉽게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適正한 基準과 方法이 앞으로도 계속 研究되어야 하겠으나 現在로서는 點檢을 필한 建物에 대하여는 그 點檢結果를 가지고 保險價額을 評價하는 것이 가장 費用을 적게 들이고 正確히 評價하는 방법이라 하겠으나 앞으로는 點檢양식을 이에 부합되도록 改善해 나가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이러한 基準이나 樣式을 만드는데 있어

서도 點檢結果의 統計·分析은 지극히 有效한 것이라 하겠다.

危險의 選擇과 分散 管理에 있어서는 말할 것도 없이 安全點檢이 절대적으로 必要하며 特別 高額契約物件에 있어서 철저한 安全點檢을 하지 않고 契約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 하겠다.

料率適用에 있어서도 安全點檢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現在의 協定料率 制度下에 있어서는 自由料率制度에서 보다는 效果가 적다고 하겠으나 安全點檢을 하지 않고 保險契約을 한다는 경우는 극히 小額物件(예를 들면 營業費나 安全點檢費도 안되는 保險料에 해당되는 物件인 경우는 保險經營上의 問題點이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적절한 方法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인 경우 외에는 認定키 곤란할 것이다.

特別 高額契約인 경우에는 再保險에 出再하는 것이 필수적인바 이러한 物件에 對한 料率は 거의 海外再保險者로부터 料率을 求得하여 아예 따라가는 狀態를 빠른 시일내에 탈피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이렇게 하자면 역시 安全點檢에 임하고 있는 技術職員들에게 保險教育을 시켜 이들로 하여금 適正料率을 算定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뿐만 아니라 原保險者 또는 再保險者가 自己 保有額을 算定하는데 있어서도 付保物件의 火災危險度나 危險當 MPL을 效果적으로 調査·策定하는 데에는 正確한 安全點檢이 必要하다. 또한 安全點檢을 통한 保有額基準等の 改善이 必要하다.

保有額基準等の 改善은 必然적으로 어떠한 再保險方式을 擇할 것이냐 에도 變更을 가져오게 마련이다. 危險을 제대로 評價함으로써 Facultative Reinsurance로 할 것인지 Surplus Line Treaty로 할 것인지 Excess Treaty로 할 것인지에 좋은 方案을 얻을 수 있다. 또한 海外市場에서의 主導權을 잡는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극히 危險한 部位에 대한 改修를 保險者가 직접 담당함으로써 罹災를 減少시킬 수 있음은 물론이고 高額付保物件에 對하여는 危險管員(點檢員)을 常時 파견 함으로써 保險會社에 보다 큰 利益을 가져 올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危險管理는 시급히 要請되고 있는 現實이라 하겠다.

火保法 第16條(安全點檢)에 「協會는 保險契約締結時 또는 保險契約 更新時마다 當該 特殊建物の 火災豫防 및 消火施設의 安全點檢을 實施하여야 한다」라고 規定되어 있는 것도 以上과 같은 點들을 감안 한 것이라고 하겠다.

물론 火保法上의 安全點檢은 Underwriting Survey만을 意味하는 것이라고 볼수는 없다. 이는 Underwriting Survey+國民財産의 保護人命被害의 防止이기때문이다.

그러나 火保法上 Underwriting Survey를 重要時하지 않았다면 이렇게까지 密着된 法規定을 만들 必要는 없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規定을 하게된 또 하나의 취지는 保險會社의 災害豫防의 機能을 重要視한 것이라고 보겠다. 保險會社가 點檢을 하게 되면 會社의 經營收支를 好轉케 하기 위해서도 自發的인 民間防災活動이 展開될 것으로 내다 본 것임에 틀림이 없을 것이다.

또 保險會社는 保險料를 받아서 經營하느니만큼 被保險者에 對해서 우선 危險要素가 무엇인지 危險部位가 어디 인지를 點檢·診斷해주는 「써비스」는 우선 하여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취지라고 보겠으며 反面 保險會社에게도 해로운 것이 없고 國家的으로도 利益이되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나. 安全點檢과 罹災調査·損害査定

一旦 點檢을 完了한 物件에 대해서는 모든 建築物의 圖面이 作成되고 主要施設의 明細가 나오기 마련이다. (火協에서는 主要物件에 對한 防災圖面을 年次의으로 作成하고 있으며 終來에는 安全點檢을 實施한 모든 「建物에 對하여 防災圖面을 作成完了할 계획으로 있다)

따라서 罹災가 낮을 경우 그 原因調査를 하는데 있어서도 편리하고 損害査法을 하는데 있어서는 절대적이다. 심지어 잿더미 밖에 남지 않은 곳에 가서도 그 損害額을 짐작할 수 있을 정도의 資料가 준비된다. 더구나 火災豫防을 위한 點檢을 實施한 結果가 있으므로 免責이나 아니냐 물 가리는데에도 큰 도움을 준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保險會社가 免責을 主張하는 境遇가 별로 없고 또한 保險當局에서도 웬만 하면 補償을 해 주는 方面으로 保險의 底邊擴大에 主力하였으나 이제는 保險會社의 免責事項에 對해서는 分明히 主張하여 좋은 判例를 남길 時期가 到來했다고 보겠다.

오늘날의 巨大한 工場이나 産業施設은 自體의 安全管理가 確立되지 않고는 하루도 無事할 수가 없는 實情인바 保險約款을 遵守하지 않는 被保險者에게 無條件 補償한다는 것 처럼 無謀한 일은 있을 수 없다. 단 한번의 事故로 保險會社가 破산을 면치 못할수도 있는 것이다. 그만큼 危險이 大形化됐다고 하겠다.

이러한 時點에서 罹災의 原因과 責任額을 正確히 査定한다는것은 점점 더 重要性을 띄우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에 對한 充分한 資料를 提供해 주는 安全點檢이야말로 그 必要性을 論할餘地가 없다고 보겠다.

다. 安全點檢과 料率制度

韓國의 保險料率制度는 協定料率制度를 채택하고 一部 外國約款에 對하여 個別的으로 一定範圍의 料率을 認定하고 있음은 周知의 事實이다. 한편 火災保險 料率은 主로 日本料率에 土臺를 두고 그간 여러차례에 걸쳐 國內의 損害率을 감안 修正에 修正을 거듭하여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料率書가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다. 따라서 옛날 보다는 많이 整備되었다고 하겠으나 料率書의 用語와 建物等級이 建築法上의 그것과 一致하지 않는다는가, 部分的으로 特定料率이 他 料率과 衡平을 잃고 있다든가 또는 너무 틀에 박혀 具體的인 物件의 形편에 따라 適

습치가 않다든가 하는 문제점이 있음을否認할 수 없는 實情이며 특히 外國保險者의 國內進出과 더불어 自由料率(競爭料率)에 익숙한 外國保險者들의 國內營業을 어떤 식으로 統制할 것인가 하는 문제등이 크게 擡頭되고 있다.

이러한 實情을 감안하여 強制保險(非競爭對象)인 特殊 建物保險에 對하여 外國保險者의 原保險進出을 統制하고, 一部 基本的인 料率에 對하여는 協定料率을 채택하고 기타 細部的인 料率에 대하여는 自由料率制度를 가미하는 方向으로 試圖해 보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이렇게 함으로써 安全點檢의 結果가 그대로 保險料率에 반영(특히 과감한 割引·割増制度의 채택)될 수 있으며 危險을 改善하고 保險料率을 合理化 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또한 우리 保險業界의 競爭能力을 向上시킬 수 있다고 생각된다. 어쨌든 이러한 料率制度의 改善과 관계없이 安全點檢을 통한 料率의 合理的인 適用은 保險業務改善과 國民財産의 保護에 크게 이바지 하고 있음은 否認할 수 없는 實情이다.

특히 工場物件의 料率이나 機械保險, 組立保險의 料率은 技術的인 點檢을 통한 研究와 더불어 많은 改善을 要한다고 하겠으며 具體的인 物件에 適合한 料率이 適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4. 安全點檢의 方向

安全點檢의 定義와 目的은 前記한 바와 같으나 다시한번 安全點檢의 目的을 強調하면 災害의 防止와 保險業務의 改善에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目的下에서 앞으로의 安全點檢의 方向은 自然的으로 결정지워진다고 보겠다. 또한 安全點檢은 火災保險會社가 共同으로 設立한 韓國火災保險協會가 實施하고 있다. 그 費用은 保險料의 一部에서 充當되고 있다.

따라서 安全點檢은 災害의 防止라는 國家利益 保險會社의 損害率減少라는 企業利益, 被保險者의 保險料負擔의 輕減이라는 私益에 同時 호응

하는 方向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안될 것으로 생각한다.

이러한 觀點에서 點檢의 基準과 方法도 再定立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火協은 現在 이를 定立하기 위해서 많은 努力을 경주하고 있다.

가. 安全點檢의 基準과 方法

安全點檢의 基準 역시 위의 方向과 관련해서 생각할때 國家의 防災의인 次元에서 火災豫防(防災)關係法規, 保險者의 關心事 내지는 要求條件 被保險者인 建物主 또는 使用主의 實情이 調和 있게 반영된 水準에서 결정되어야 하고 그 方法이나 費用역시도 最小의 費用으로 最大의 效果를 노리는 經濟的인 原則에 立脚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火協은 앞으로 이러한 觀點에서 새로운 點檢基準과 要領을 制定하여야 할 것으로 알고 이미 이 作業에 착수하고 있다.

원래 法規란 一般的인 事象을 對象으로 抽象的으로 만들어진 規定이 많으므로 具體的인 實情에 적합치 않은 경우가 많고 韓國의 境遇 先進國의 立法例를 그대로 받아들인 境遇가 많아 法規의 具體的인 適用에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따라서 關係法規의 大部分은 安全點檢基準으로 채택할 수 있으나 一部條項은 基準에서 修正 또는 排除되어야 할 것이며 保險者의 要求事項이 基準과 樣式에 補強되어야 할 것이고 具體的인 實情에 맞는 融通性和 細部規定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點檢의 方法 역시 融通性이 있고 效果的인 方法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애당초 모든 建物에 4인(建築, 電氣, 機械, 化工분야별 각 1인)이 出張點檢을 하였으나 現在 大形建物에는 4인이 1組가 되어 點檢을 하고 小形建物에는 2인이 組가 되어 點檢을 實施하고 있다. 궁극적으로는 앞으로는 大形建物과 新築建物 工場 등을 除外한 大多數의 建物은 2인 또는 1인이 點檢을 할 수 있는 方法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點檢의 要領이나 樣式도 부단히 開發되

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防災에 관한 本格的인 研究로 並行되어야 할 것이다.

나. 防災研究의 重要性

外國에는 數多한 防災研究·試驗機關이 있다. 그러나 韓國에는 火災豫防이나 防災를 專門으로 하는 機關이 전혀 없던 實情에서 火協이 創設되었던 것이다. 火保法 第15條에(協會의 業務) 第3項에도「火災豫防과 消火施設에 關한 資料의 調査·研究 및 啓蒙」이라고 法定業務로서 明白히 規定되어 있으나 아직까지 本格的인 研究 設備나 人力이 確保되어 있지 않은 狀態에 있음은 遺憾스러운 일이라고 아니 할 수 없으며 各種 現代的 施設의 擴充, 새로운 原因에 의한, 새로운 形態의 火災가 發生하고 災害가 大形化해가는 이 時點에서 防災研究의 重要性은 多言을 要하지 않는다고 하겠다. 소임기 전에 외양간을 고치는 措施가 절실히 要求되고 있다고 하겠다.

5. 點檢員의 保險教育

원래 保險業務에는 該博한 知識을 必要로 한다는 것은 잘 아는 바이나 現代的 損害保險은 大

工場, 特殊施設, 高層빌딩등 現代的인 產業施設에 대한 理解와 現代的인 工法, 作業過程등을 모르고 保險業務를 한다는 것은 言語道斷이라 하겠다. 한편 이러한 知識들은 理工系大學出身이 아니고서는 습득키가 一般的으로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의 保險業務에는 理工系出身「엘리트」를 상당數 必要로 할것이라고 豫想된다. 실지로 火協이 理工系出身으로 點檢員을 構成하여 點檢을 한 經驗에 의하면 保險業務에 相當히 有用한 것으로 判斷되며 이들에게 所定の 保險教育만 시키면 優秀한 保險人으로서 養成할 수 있음이 判明되었다. 따라서 火協에서 體系있는 保險教育만 시킨다면 韓國保險業界의 將來를 책임질 充分한 人材들을 길러 낼 수 있다고 確信할 수 있다.

이러한 點에 착안하여 火協에서는 點檢員에 對한 教育에 여러가지로 힘을 쓰고 있으며 體系있고 알찬 保險教育을 通하여 韓國保險業界의 體質改善에 이바지할 것으로 期待되고 있다.

發明品 紹介

<有害「가스」警報·除去感知器>

일산화탄소 등「가스」와 煤煙, 악취등을 자동제거하거나 警報해주는 電子自動式「가스」感知機가 나왔다. 유림電자가 韓國과 日本에서 特許를 받았고 工業標準 시험소의 성능검사, 75년 貿易진흥공사의 「아이디어」募集에서 入賞까지한 이 「가스」感知機는 室內 공기가 有害「가스」나 연기로 일정치 이상 오염되면 즉시 작동하여 연결된 환풍기를 돌려 淨化하기도 하고 경보장치를 작동시켜 알려준다. 「가스·논」으로 불리는 이 商品은 12개의 「모델」로 생산되고 있다.

<自動溫度 측정기>

織物, 製紙, 불투명, 「플라스틱」, 化學약품, 電子 및 금속공업계에서 사용할 수 있는 「System 4200」이라는 完全自動溫度測定 및 調節裝置가 개발되었다. 이 장치는 作業時 온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준다. 이 장치는 또한 직접 접촉을 하지 않아도 光學的으로 온도를 측정할 수 있으며 (섭씨 24°C에서 1000°C까지의 온도)誤差는 1%이다.